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3. 13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7년 3월 6일

· 회부일자 : 1997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1997. 3.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경국)

가. 제안이유

장애인, 재래시장 재개발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 지원을 축소하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조항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1)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3급, 시각장애인은 1급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함(안 제3조의 2)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안 제17조의 2)

2)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관련규정 신설

-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함(안 제26조의 2)

3) 점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감면율 축소 조정

- 부동산 등기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점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20%를 경감하던 것을 10%로 축소(안 제20조 제1항, 제2항)

4) 불합리한 조문 보완

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임대사업자등이 미분양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임대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최초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안 제14조 제2항)

나. 농외소득원 개발 감면규정 보완

-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제276조)과 중복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감면조례의 해당 규제 삭제(안 제18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취득하는 모든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 대상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과세대상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형평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단지내」로 감면 범위를 제한하고 감면 업종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제조업)으로 구체화 하며, 협동화 사업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중소기업협동화 사업 단지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 부동산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제1항 제3호)

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감면하여 주던 것을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함(안 제16조의 2)

라. 취득세·등록세 추징규정 보완

- 현행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규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던

것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토록 함(안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건영)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 및 목적이 달성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은 보완하는 등 도세 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인이 본인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 시설, 공중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일부조문을 보완 하였으며,
-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 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하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하였고,

- 점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신청시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점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과세 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된 경우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인원 7인, 찬성 7인)